

국 토 교 통 부

훈계요구·통보

제 목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기 관 명 부산광역시

훈계대상자 부산광역시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6. 8. 3.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과)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¹⁸³⁾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

183) ①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 ②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

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 따르면 1차 위반의 경우 처분내용은 “경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과)에서는 2013. 11. 4. 등록기준 신고를 한 (주)○○○○○○의 적법한 등록기준 신고기간이 2016. 11. 5.부터 2017. 1. 3. 이므로 등록기준 신고 없이 위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정부합동감사 시 까지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은 (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6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은 11개의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의무 위반업체 대상 행정조치 현황

등록 번호	업체명	적법한 등록기준 신고기간	등록기준 신고일	신고기간 도과일수	행정처분 이행여부
부-000	(주)○○○○○○○	2016. 11. 5. ~ 2017. 1. 3.	미신고	80일 (’17. 3. 24. 기준)	미이행
부-000	○○○○○○○(주)	2016. 11. 25. ~ 2017. 1. 23.	미신고	60일 (’17. 3. 24. 기준)	미이행
000	○○○○○○○(주)	2016. 4. 18. ~ 2016. 6. 16.	2016. 6. 30.	14일	미이행

부-00	○○○○○(주)	2016. 6. 28. ~ 2016. 8. 26.	2016. 9. 13.	18일	미이행
부-00	(주)○○○○○시픽	2016. 5. 4. ~ 2016. 7. 2.	2016. 10. 6.	96일	미이행
부-000	(주)○○○○○	2016. 6. 29. ~ 2016. 8. 27.	2016. 10. 6.	40일	미이행
부-000	○○○○○(주)	2016. 6. 22. ~ 2016. 8. 20.	2016. 12. 5.	107일	미이행
부-000	(주)○○○○○○○	2016. 5. 9. ~ 2016. 7. 7.	2016. 8. 4.	28일	미이행
부-000	(주)○○○○○○○○○ ○○	2016. 4. 5. ~ 2016. 6. 3.	2016. 6. 9.	6일	미이행
부-000	(주)○○○○○○○○○	2016. 7. 9. ~ 2016. 9. 6.	2016. 10. 5.	29일	미이행
부-000	○○○○○(주)	2016. 9. 5. ~ 2016. 11. 3.	2016. 12. 26.	53일	미이행

※ 부산광역시(○○○○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적법한 등록기준 신고기간에 등록기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